

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9035
결재일자	2015.7.1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306호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
조혜란	이정희	이윤영	박기웅	07/15 이비오
협조				
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-  
일부개정 계획



성 동 구

## - 서울특별시 성동구 -

#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계획

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

## I 추진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)

## II 개정 사유

-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개정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구 분	종 전	변 경
지방재정법 (제60조)	○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,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○ 지자체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, 구성은 지방보조금심의회 규정 준용 ※ 공무원이 전체위원의 1/4을 초과하지 못함
동법 시행령 (제70조)	○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	○ 삭 제
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	○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 【기획예산과-228호(2012. 9. 24.)】	○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 (안 제4조) ※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충족하며 재정업무를 심사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

### Ⅲ

## 주요 내용

-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방법 등 규정(안 제2조)
  - 위원회 구성 시 **성별 고려**
  - 위원장: 부구청장 ⇒ **민간위원 중 호선**
    -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  - 위촉위원의 임기: 2년(연임 가능) ⇒ **3년(1회에 한하여 연임)**
    -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 가능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(안 제4조)
  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
- 예산 및 결산공시 주관 부서 분리(안 제7조제2항)
  - 재정공시(기획예산과) ⇒ 예산 기준 공시(기획예산과), 결산 기준 공시(재무과)

### Ⅳ

## 향후 계획

-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·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... 2015. 7월 중
-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..... 2015. 8. 11.
- 제219회 임시회 의안 제출 ..... 2015. 8. 28.
- 조례 공포 ..... 2015. 9월 중

- 붙임 1.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.  
2.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 1부.  
3. 관련 법규 1부. 끝.